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55455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554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2945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안예은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294514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8. 12. 6.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E호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쪽 15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L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으므로 문서제출자인 원고가 그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5353 판결은 피고가 위 인영이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6쪽 16행부터 7쪽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L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인 2018. 9. 초경 L 등과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K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L은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L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이 사건 점포까지 찾아온 K에게

피고를 소개시켜주고 그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나, L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K로서는 더욱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② 원고가 2018. 9. 6.경 교부받은 위임장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으로 보이는데, 수임인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임인 란에 피고와 L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2018. 9. 6., 지급기일 2018. 12. 6.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발행인,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및 수취인 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위임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약속어음에도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 란에 피고와 L의 기명날인이 있기는 하나,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및 수취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위 위임장은 그 자체로도 미완성이고,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는 전화 등을 통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참여하지 않은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③ L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쉽게 피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월세계약서 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명목으로 피고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할 수도 있으며, 더구나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로서는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L이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명재권

판사이민수

판사송승용

별지